

포스텍 동호회 운영지침 신규대비표(2025.04.01. 개정)

현행	개정(안)	개정사유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포항공과대학교 (이하 "본 대학" 이라 한다) 의 동호회(이하 "그룹"이라한다)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단체 활동을 통한 구성원 상호간의 일체감 조성 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포항공과대학교 (이하 "본 대학" 이라 한다) 의 동호회(이하 "그룹"이라한다)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단체 활동을 통한 구성원 상호간의 일체감 조성 과 친목도모를 통한 밝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	학생 동아리 활동과 구분 필요
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본 대학 전 구성원에게 적용한다.	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본 대학에 재직중인 교직원(연구원 포함)에게 적용한다. (법인, 가속기 포함)	가입대상자의 명확화
제3조(등록대상 및 기준) 2. 본 대학 구성원으로서 체육, 레저, 문예, 음악, 봉사 등의 활동을 위한 친목 그룹 4. 구성원 누구나 가입 할 수 있고 임의로 가입을 제한하지 아니하며, 그룹의 활성화를 위 해 필요시 외부인원을 일부 포함 할 수 있다.	제3조(등록대상 및 기준) 2. 본 대학에 재직중인 교직원(연구원 포함) 으로서 체육, 레저, 문예, 음악, 봉사 등의 활동을 위한 친목 그룹 4. 삭제	
제4조(등록방법 및 시기) ① 대학에 등록하고자 하는 그룹은 다음 각 호를 갖추어 매년 3월 31일까지 주관부서에 신청한다 (별지 제1호 서식)	제4조(등록방법 및 시기) ① 대학에 등록하고자 하는 그룹은 다음 각 호를 갖추어 분기별 (년4회, 3/31, 4/1~6/31, 7/1~9/30, 10/1~12/31)로 주관부서에 신청한다 (별지 제1호 서식)	동호회 등록시기 확대 (년1회-> 년4회)
제6조(지원요건 및 방법) ② 대학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그룹은 그 활동 실적을 회계종료 1개월 전까지 대학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(별지 제3호 서식) 다만,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그룹은 지원하지 아니한다.	제6조(지원요건 및 방법) ② 대학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그룹은 그 활동실적을 회계종료 1개월 전까지 대학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(별지 제3호 서식)	